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621
----------	------

발의연월일 : 2025. 4. 7.

발의자 : 박홍배 · 송재봉 · 민병덕

이수진 · 윤준병 · 박정현

서미화 · 황명선 · 김한규

김현정 · 박정 · 정진욱

김태선 · 이정현 · 이광희

한준호 · 김윤 · 이용우

이강일 · 전종덕 의원

(2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범위가 현재 3개월로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체불된 임금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

최근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의 경제적 및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와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의 도산이나 폐업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체불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이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생산적인 고용 환경을 저해하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대지급금을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퇴직 후에도 대지급금을 보다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체불된 임금을 회수할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안 제7조 제2항 제1호).

법률 제 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제38조제2항제1호에”를 “제49조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근로기준법」 <u>제38조제2항 제1호에</u>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p> <p>2. · 3. (생 략)</p>	<p>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u>제49조에</u> -----</p> <p>-----</p> <p>-----</p> <p>-----</p> <p>-----</p> <p>2. · 3. (현행과 같음)</p>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